

2014. 2. 7(금) 제 2 회의

제 3 분과

치안과 자치경찰

치안선호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시민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f Decisive Factors about the Preference of Police Service

- Towards Mediating Effects of Citizens' Satisfaction -

윤 종 성(성신여자대학교)

김 영 오(영남외국어대학)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치안선호도 결정요인 분석결과 |
| II. 이론적 고찰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 III. 연구가설 | 참고문헌 |

I . 문제제기

경찰은 2012년부터 업무추진방향을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두고 효율적인 치안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경찰서비스현장¹⁾을 제정하여 치안서비스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38개 중앙부처 중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4위인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식정보화사회의 경찰기능이 복잡한 사회 환경만큼 치안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과거 소극적 경찰기능인 치안유지 및 질서유지의 기능보다 공공복리증진의 봉사기능에 더욱 치중한 치안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이기도하다. 오늘날 치안서비스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하나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의 핵심 서비스임을 자각하고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며 치안서비스에 대한 신뢰의 전제는 성실, 공정, 정직, 친절한 업무태도에서 가능하다²⁾. 치안서비스는 그 수혜자인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비스 질과 그 제공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대응전략은 행정비용을 감축시키고 시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적기에 적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응전략이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

1) 경찰서비스 현장은 5개 영역(생활안전, 경찰민원, 수사, 교통, 진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장의 진정한 의미는 국민의 경찰로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2) 김정현 외(2002),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신뢰결정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1호, pp.159-178.

서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경찰청에서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잘 활용함으로써 치안서비스가 지역민의 필요와 요구에 보다 잘 대응하여 고객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³⁾. 그러나 치안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본청중심의 일관되고 획일적으로 시행됨은 물론 표준적인 평가모형이 존재하지 않고 더욱이 평가자체가 정량적 평가에 편중되어 있어 평가방법상 지역민의 만족도 측면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평가지표나 표준화된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크게 공급자 측면의 양적평가와 수요자 측면의 질적 평가로 구분 된다⁴⁾. 이러한 측면에서 치안서비스 평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평가에 따른 지표선정, 평가방법, 평가영역 측면에서 곤란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먼저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평가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조직 전반에 대하여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치안서비스 만족도 평가가 다소 높지만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질적 측면에서 평가해봄으로써 실질적인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파악, 치안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치안선호도에 따른 매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치안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명문화하면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치안서비스의 만족도는 필요시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인식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치안서비스 질은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치안서비스 질은 시민들의 치안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시민들의 치안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치안서비스 질과 치안선호도 간,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고찰

1. 치안서비스의 개념

먼저 공공서비스란(public service) 정부가 일정한 정치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국민생활을 보호, 규제, 봉사하며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

3) 최용렬(2013), 경찰조직론, 서울: 박영사.

4) 공공서비스에 대한 양적평가로는 최창수(2001: 409-426), 김현구외(2001: 1-43), 한표환(2001: 124-156) 등이 있으며, 질적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박희정(2001: 42-51), 라희문외(1999: 93-114) 등이 있다.

5) 박기관(2008), “지방정부 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와 영향요인 분석: 횡성군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4집 3호.

행하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가 인간에 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는 정부의 활동으로 정의된다면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치안서비스 역시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 범죄와 무질서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하는 공공서비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⁶⁾. 즉 치안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일부로서 국민보호와 질서유지에 관련된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특정지역을 구분하여 지방공공재나 국가공공재로 공급되기도 한다. 치안서비스 역시 일반 공공서비스의 한 유형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찰 법규상으로 보면⁷⁾ 경찰의 임무는 크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인 위험의 방지와 사후적 조치인 범죄수사를 위한 법집행에 국한되어 있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치안서비스는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경찰활동전반을 치안서비스라고 보아야 한다⁸⁾. 오늘 날 치안서비스는 지역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확고한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의 치안서비스 만족수준이 바로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하겠다⁹⁾. 따라서 치안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인 경찰기관보다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 또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중시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⁰⁾.

2.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시민만족도란 시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주관적 인식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혜자가 느끼는 감정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치안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인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에 대한 충족정도와 관련된 모든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치안환경, 치안서비스의 내용, 치안서비스의 적절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치안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의 정도이다¹¹⁾.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은 자신의 지각과 인식이 반영되므로 치안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가지게 된다. 오늘날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정부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중대시키기 위해 수요자 혹은 시민중심의 치안서비스 체제로 변화를 모색해 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치안활동의 성과와 내용이 치안서비스로 구체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치안서비스가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잘 공급되고 있는지? 또한 치안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수요에 얼마나 대응적이며 형평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고 있

6) 김충남(2009), 경찰학개론, 서울: 박영사.

7)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등.

8) 김인(1997),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치안연구소, p.40.

9) Gillingham, R and W. W. Reece(1979), A New Approach to Quality of Life Measurement, Urban Studies, Vol 16: 329.

10) 이윤호(2006), 경찰학, 서울: 박영사.

11) 김정훈(2005), “경찰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애호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치안시책자료, pp. 502-533.

다. 이처럼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정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결국 치안서비스의 평가는 치안행정의 관점에서 평가해온 것이 전통적인 치안서비스 전달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관점에서 치안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시민평가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응적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다¹²⁾.

3. 치안선호도

치안선호도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시민들이 가지는 태도로 치안서비스에 대한 애착 혹은 애정인 시민들의 감정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치안활동은 공공정책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시 되고 있으며 치안서비스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만족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안선호도란 수혜자들이 치안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 감정을 경험한 것에 대하여 치안서비스가 사전 기대보다 이용결과가 크거나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는 시민들이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시민들이 인식하는 실제상의 평가이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¹³⁾. 먼저, 치안선호도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치안활동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자들에게 양과 질의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치안선호도는 시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신뢰성, 책임성, 민주성,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안활동에 대한 존재가치의 정당성을 확인하므로써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¹⁴⁾.

4. 치안서비스 질, 치안서비스 만족도, 치안선호도와의 인과관계

가. 치안서비스 질과 치안서비스 만족도와의 관계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의 만족에 대한 인과관계의 논쟁은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통상 학자들은 만족과 서비스 질이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해 왔다¹⁵⁾. 그러나 최근에 학자들 간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만족 모두 개별적 서비스 수준이나 혹은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서비스 질과 서비스 만족은 분석적 측면에서 의미가 같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가 다르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교적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 그러나 서비스 질이 서비스 만족의 선행변

12) 최선우(2003), 경찰과 커뮤니티, 서울: 대왕사.

13) 이황우 · 이병종(2006), “경찰서비스의 시민평가에 관한 연구”, 공안행정학회보, 제25호, pp.12-44.

14) 최선우(2003):재인용.

15) 정용길 · 민병권(1988),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논집, 제14권 제2호, pp.111-130.

16) 이유재 · 라선아(2003), “서비스 품질의 각 차원이 CS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에 대한 연구”, 마케이팅

수라고 보는 견해와 서비스 만족이 서비스 질의 선행변수라고 보는 견해로 구분된다. 현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서비스 질이 서비스 만족의 선행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¹⁷⁾. Gaster(1995)의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질이 매우 높고,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족은 성과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가 다름에 따라 평가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만족 정도를 통해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논리는 서비스 만족과 서비스 질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 치안서비스 만족도와 치안선호도의 관계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다양한 경로와 평가과정을 통하여 치안서비스를 이용한 후, 본인이 판단하는 척도에 따라 만족 혹은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시 동일한 치안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우호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¹⁸⁾.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대부분의 논자들은 서비스 질과 서비스 만족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서로 다른 개념으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치안서비스 만족의 평가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실제경험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결합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⁹⁾. 치안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경험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의 인지적 평가로 그들의 태도에 의한 형태로 이해되지만 치안선호도는 치안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로 파악되고 있다. 서비스 만족과 치안선호도 간 영향관계는 Oliver(1997), Cronin & Taylor(1992)의 연구에서 서비스 만족이 치안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치안서비스 수행에 대한 이전의 기대를 바탕으로 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태도는 치안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Dabholkar, Pratibha, David, Dayle, Shepherd & Thorpe(2000)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만족이 서비스 질과 서비스 선호도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더불어 연구모형을 입증하였다.

5. 선행연구

치안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크게 주관적 평가(subjective evaluation)와 객관적인 평가(objective evaluation)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²⁰⁾. 주관적 평가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연구, 한국마케팅학회, 제18권 제4호, pp.67-97.

- 17) 박동일(2011), “노인방문요양서비스품질이 만족도를 매개효과로 서비스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이정실 · 박명주(2005), “호텔 레스토랑의 서비스 스케이프, 감정적 반응 그리고 행동의도와 관계: 부산 지역 관광호텔 중심으로”, 한국서비스경영학회지,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제6권 제2호, pp.105-128.
- 19) 우양호 · 홍미영(2005), “공공서비스 질 측정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서브켈 모형의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pp.647-674.
- 20) Rogers, Steve(1990: 19)에 의하면, 성과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목표를 자체의 활동을 통하여 얼마나 달성 하였는가’로 보고 있으며, Smith(1988: 5-6)는 ‘기대나 목표가 달성된 정도’로 보고 있다.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는 치안서비스 제공 주체인 경찰공무원에게 그들이 속한 경찰기관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²¹⁾. 치안서비스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도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전자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판단과 경험에 의존하는 델파이(Delphi)방법 등이 사용된다. 후자는 치안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시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70년대 이후부터 치안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가 활용되어 왔다²²⁾. 흔히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평가는 시민들의 치안수요나 욕구의 충족정도, 치안 서비스 영역에서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특히, 고객 지향적 치안서비스의 패러다임 하에서 치안행정의 대응성 확보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우, 공공서비스에 관한 질적 평가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공공서비스의 한 분야인 치안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치안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평가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다수 있지만, 치안서비스의 만족도가 시민들의 치안선호도에 미치는 연구는 김정훈(2005)의 경찰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애호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다. 그의 연구는 PZB(1988)의 SERVQUAL 모형을 적용,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치안서비스의 구성을 과정품질, 환경품질, 결과품질, 사회품질 차원으로 유형화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평가, 치안서비스 질에 대한 시민평가,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에 대한 충족정도, 정신상태,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질적 평가라 할 수 있지만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고 질적 혹은 양적평가의 통합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평가 모형 측면에서 질적 평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김기수·김덕희(1999)의 시민들이 느끼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의 연구에서도 SERVQUAL을 적용하였는데 평가요소는 외형적인 요소, 신뢰성, 요구·응대성, 확신성, 공감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김석범(2007)의 치안서비스의 규범적 성과측정 가능성에 대한 소고에서는 경찰활동을 효율성 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황우·이병종(2006)은 경찰서비스의 시민평가를 통해 경찰관이 인본중심으로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휴먼서비스와 함께 치안서비스에서 고객만족전략의 하나로 민원서비스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치안서비스 질의 평가요소를 대응성, 공감성, 친절성, 신뢰성, 상징성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은 치안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상의(2008)는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조직운영 측면에서 경찰관의 참여의식을 위해 서비스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천근(2011)은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절성과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건처리의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21) Brown, Karin., Coulter, Philip B.(1983),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Police Service Delivery, PAR, 43(1), pp.50-58.

22) 한국행정연구원(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서울특별시(2000) 등 시민평가에 관한 연구가 있어 왔다.

하였으며, 안정기(2006)는 민원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업무처리태도와 친절성을 강조하고, 김인겸(2008)은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민원실 방문조사를 통해 항목별 긴급개선방안의 제안으로 경찰의 대응성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 경찰청이 최근 3년간 경찰서비스 만족도를 지표별로 측정하였는데, 그 변수는 공정성, 신속성, 접근성, 대응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하지만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평가 조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시민들의 만족도 평가지표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고 평가분야나 변수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이 내재되었다는 점과 변수간의 내재적 인과관계에 따른 체계성이 결여되어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연구의 상당수가 조사 설계의 일관성이나 조사항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는 각 지방경찰청별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국외연구로 Brown, Karin & Coulter(1983)는 경찰서비스를 대상으로 수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정치적 태도, 서비스의 객관적 조건, 서비스의 경험, 서비스에 대한 기대라는 독립변수와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라는 종속변수로 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측정을 시도하였고, P. A. J. Waddington(1999)은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연구에서 경찰활동은 시민들의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시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시민들의 존중정도에 따라 폭력사용이 감소될 것이며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National Research Council(2004)에 의하면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 전문가적 규범, 그리고 합법성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따라 만족도를 판단하고, 그 판단기준은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념과 치안서비스의 권위인정 정도에 따르며 시민들의 이러한 판단은 합법성에 기인하고, 합법성은 치안서비스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측정은 시민평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고 시사 하는바가 있지만 이들 연구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특정분야에 대한 평가로 전체 치안서비스 평가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치안서비스는 행정서비스와 달리 범죄예방이 주 업무로 이는 규제행정에 속한다. 규제행정에는 능률성 보다 합법성이 중요시됨으로 치안서비스는 법 규정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측정 변수를 선정하여야 하나 선행연구는 그러하지 못하다. 특히 지금까지 치안서비스에 대한 연구경향은 대다수가 성과측정과 관련된 효율성 측면에서 조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는 효율성 위주의 성과측정시스템을 보완하고 규범적 차원의 측정방식과 기술적, 관리적 측면의 가치와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형평성, 합법성, 공정성,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은 시민 만족도에 관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평가에 있어 주로 단일평가, 사례위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 등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체로 치안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혜자 평가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횟 · 단면적인 비교보다는 지속적인 만족도 조

사를 통하여 동일서비스에 대한 시계열적인 비교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²³⁾. 특히 공통적으로 구성된 치안지표는 실제 경찰에서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한계를 지닌다²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안서비스 질이 시민들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시민들의 인식이 치안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검증과 선정된 변수의 타당성 검토 및 치안서비스 질, 치안서비스 만족도, 치안선호도의 관계 설정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6. 변수선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치안서비스의 질 요인을 선정하고, 세부적인 하위지표를 이용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평가, 시민들의 만족도가 치안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봄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치안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평가에 필요한 치안서비스 질(service quality)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은 <표1>과 같이 선행연구의 공통된 변수인 신뢰성, 책임성, 친절성, 전문성, 인권보장성 등을 선정하였고, 이들 5개 요인이 시민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평가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뢰성(responsibility)은 시민들이 치안서비스의 공급자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²⁵⁾. 다음 책임성(accountability)은 맡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성질에 대한 태도로 경찰공무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이 처리하는 일에 대한 확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친절성(kindness)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중함과 우호적인 태도를 말한다²⁶⁾. 즉, 경찰공무원이 시민들을 대면 시 친근감의 유발정도나 공손한 응대의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speciality)은 치안서비스의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동원·조직화하여 통합·조정하는 조직적 전문성을 말한다. 경찰공무원들의 정직하고 올바른 업무수행은 이러한 전문성에 의해 실현되어진다고 하겠다²⁷⁾.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자율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끝으로 인권보장성(guarantee of human rights)은 사람이 개인 또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거나 보호 받을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시 법

23) 김영오·이원욱(2004),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질이 성과에 미친 영향”, 행정논총, 제42권 3호, pp.53-74.

24) 김석범(2007), “치안서비스의 규범적 성과측정 가능성에 대한 소고”,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pp.100-122.

25) 박종훈(2001),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1호, pp.40-66.

26) 박기관(2008), “지방정부 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와 영향요인 분석: 획성군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제24집 3호.

27) 최병대, 공무원의 전문성확보 방안: 서울시 도시계획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pp.125-144.

28) Nalbandian(1990)은 공공분야에서의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의 분석능력, 합리성, 고객(주민)의견의 수렴 능력 및 이해집단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상능력을 들고 있고 한편, Mosher(1978)는 전문분야의 교육, 직무경험, 대학에서의 관련분야의 교육 등을 들고 있다.

적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인권의 법률적 보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치안서비스 질이 치안서비스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치안선호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주안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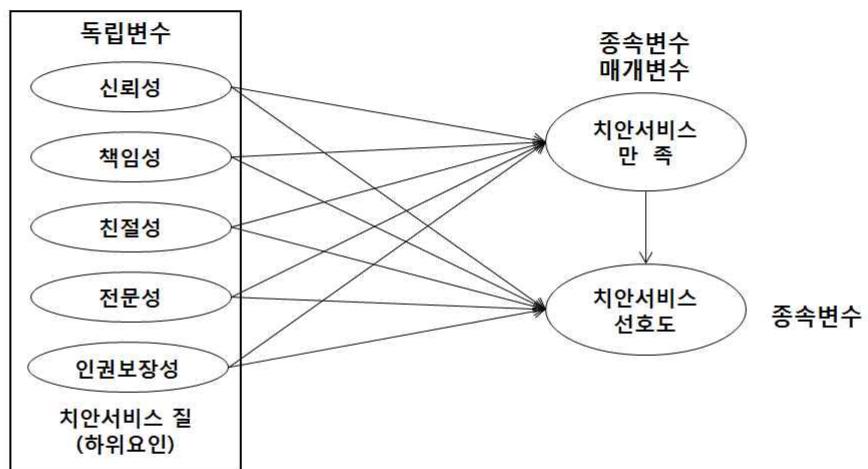
<표1> 치안서비스 시민 만족도 평가요소

연구자		년도	평가요소
국내연구	김석범	2007	공정성·형평성
	김정훈	2005	과정품질·환경품질·결과품질·사회품질
	이황우·이병종	2006	대응성·공감성·친절성·신뢰성·상징성
	최천근	2011	공정성·신속성·전문성
	안정기	2006	친절성
	김인겸	2008	대응성
	김기수·김덕희	1999	신뢰성·요구응대성·확신·공감성
	경찰청	2012	공정성, 신속성, 접근성, 대응성
국외연구	PZB	1985	접근성·신용성·신뢰성·대응성·안전성·유형성
	Brown & Coulter	1983	공평성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4	합법성
	Waddington	1999	공정성

다음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은 김영오 외(2004)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질이 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제인용하였고, 공공서비스의 질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치안서비스 시민 만족도 평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이에 대한 측정은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의존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시민 만족도 평가에서 고려되는 것은 평가주체(subjects of evaluation), 분석적 측면(analytical dimensions), 성과변수(result or performance variables)로 구분되는 것으로 연구모형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⁹⁾. 첫째, 평가주체(subjects of evaluation)는 시민으로부터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기대감과 지각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지역민을 조사대상의 평가주체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시민들로 하여금 전화 혹은 설문조사(survey research)를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서 평가자와 피 평가자에 대한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둘째, 분석적 측면(analytical dimensions)은 통상 경찰청에 명시된 경찰사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평가지표의 실효성 문제나 규범성 그리고 추상성 등의 이유로 실제 활용 가능한 평가지표로 요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5개의 치안서비스 질 신뢰성, 책임성, 친절성, 전문성, 인권보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치안서비스 질(service quality)에 대한 분석단계는 투입된 변수에 따른 평가주체가 치안서비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고 넷째, 성과변수(result or performance variables)는 치안서비스 결과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한 치안서비스 질에 대하여 만족적인지 혹은 치안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평가한 결과이다.

29) 김영오 · 이원숙(2004): 제인용.

<그림 1> 연구모형



출처 : 김영오 · 이원욱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질이 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재인용, 2004.

III. 연구가설

치안서비스의 만족도는 치안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의 문제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치안서비스 질은 치안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들의 주관적 상태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느낌, 경험, 기대, 판단에 의해 야기되는 개인적인 심리상태이다. 그리고 만족이란 시민들이 느끼는 마음이나 판단의 상태이며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가 다르면 느끼는 만족도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주관적 상태 중에서 시민 개인의 치안서비스 경험과 치안서비스 기대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논의 된 바 있다³⁰⁾.

가설 2, 치안서비스 질은 치안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치안선호도는 치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만족정도에 따라 후속행동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치안서비스는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질적 차원에서 변수를 선정하여 측정해 봄으로써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다시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³¹⁾.

30) 조은경(1998),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31) 김정훈(2005): 재인용.

가설 3,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치안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치안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선호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추천하게 된다.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고 치안서비스의 요구가 다양화 되면서 치안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이 타인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시민만족과 선호도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대부분 시민만족이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²⁾.

가설 4, 치안서비스 질과 치안선호도간에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시민들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안서비스를 경험하고 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인지적인 반응으로 정의된다. 이는 인식된 치안서비스의 질에 대한 치안선호도에 미치는 매개변수로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이 행동 조직화를 이행할 수 있는 판단과 변화하는 과제들의 요구에 기능하기 위한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기능들이 조합된 행동방향으로 체계화하는 생성적 능력을 의미한다³³⁾.

IV. 치안선호도 결정요인 분석결과

1. 조사설계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 8개 자치구, 군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2013년 8월 5일부터 9월 7일 까지 약 4주간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치안서비스 수혜자인 일반시민을 선정하였다. 특히 조사지역에서 무작위로 설문을 받았다. 실제 조사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가 다수 있었지만 대체로 이들은 대구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장과 교육, 업무적인 일 등으로 일과 중 응답지역에서 생활하는 자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대구광역시가 치안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치안서비스를 수혜받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설문에 참여한 자는 주로 경찰서나 관공서 민원실, 금융기관, 공원 등 대중이 밀집되어 있는 공공시설 이용자였다. 설문지는 400부를 배부하여 36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6.5%를 차지했다. 질문지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신뢰성, 책임성, 친절성, 전문성, 인권보장성 등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은 주민평가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과 기술적인 통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 검증방법인 t-test(독립변수가 2집단인 경우),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혹은 F검증), 교차분석(종속변수가 명목척도인 경우)을 이용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평가지표의 구성상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요

32) 김정현 외(2002),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신뢰결정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1호, pp.159-178.
33) 최선우(2003), 경찰과 커뮤니티, 서울: 대왕사.

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시민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Sobel test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2. 기술적 통계

아래 <표2>는 요인분석 및 기술통계를 나타낸 것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항목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 요인분석 및 기술통계

항 목 \ 요 인	신뢰성	책임성	친절성	전문성	인권보장성
요인적재 값	0.570	0.630	0.649	0.694	0.726
	0.702	0.724	0.712	0.731	0.717
	0.747	0.724	0.743	0.795	0.754
	0.727	0.631	0.658	0.741	
	0.541	0.565	0.522	0.681	
			0.577		
			0.608		
			0.506		
			0.528		
아이겐 값	1.005	1.124	13.579	1.445	0.967
%분산	3.721	4.164	50.291	5.352	3.581
평균	3.738	3.663	3.710	3.563	3.497
표준편차	0.756	0.721	0.687	0.733	0.756

신뢰성의 아이겐 값이 1.005, 평균은 3.738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책임성은 아이겐 값은 1.124, 평균은 3.663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며 친절성은 아이겐 값이 13.579, 평균은 3.710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성은 아이겐 값은 1.445, 평균은 3.563점으로 나타났으며 인권보장성은 아이겐 값이 0.967, 평균은 3.49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지표를 위한 5개 요인은 시민의 지표측정에 있어서 타당성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상관분석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기준으로 변수계산을 통해 얻어진 요인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3>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양측검정 결과로 상관계수는 모두 양수이므로 모든 변수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관계수의 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신뢰성, 책임성, 친절성, 전문성, 인

권보장성 사이의 상관계수보다 이를 변수와 서비스만족, 치안선호도와의 상관계수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요인변수간의 상관계수

구 분	서비스만족	신뢰성	책임성	친절성	전문성	인권보장성	치안선호도
서비스만족	1						
신뢰성	.817**	1					
책임성	.771**	.733**	1				
친절성	.835**	.779**	.767**	1			
전문성	.693**	.657**	.628**	.689**	1		
인권보장성	.693**	.626**	.608**	.650**	.532**	1	
치안선호도	.857**	.791**	.761**	.815**	.722**	.707**	1

*p<0.05 **p<0.01

4. 연구가설의 검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독립변수인 신뢰성, 책임성, 친절성, 전문성, 인권보장성이 치안서비스 만족과 치안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치안서비스 질이 치안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4>는 종속변수인 치안서비스 만족에 대한 독립변수인 치안서비스 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서비스 질 변수는 서비스 질을 구성하는 요인변수 신뢰성, 책임성, 친절성, 전문성, 인권보장성의 합 점수의 평균이며, 변수계산을 통하여 새로 만들어진 변수이다.

<표4> 치안서비스 질에 대한 치안서비스 만족 회귀분석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독립변수	(상수)	-1.043	.122		-8.521*** .000
	신뢰성	.349	.048	.292	7.273*** .000
	책임성	.193	.048	.154	3.991*** .000
	친절성	.420	.058	.319	7.281*** .000
	전문성	.126	.041	.102	3.088** .002
	인권보장성	.185	.038	.155	4.907*** .000
R제곱	0.802				
수정된 R제곱	0.799				
F값	307.350				
유의확률	0.000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은 0.802이고 모형의 F값은 307.350($p=0.000$)이다. 즉, 설명력은 대략 80.2%정도로 모형은 아주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 신뢰성(0.349, $p<0.05$), 책임성(0.193, $p<0.05$), 친절성(0.42, $p<0.05$), 전문성(0.126, $p<0.05$), 인권보장성(0.185, $p<0.05$)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하다. 표준화 회귀계수 베타를 살펴보면, 절대 값이 가장 큰 변수는 친절성으로 베타 값이 0.319이다. 그다음으로 신뢰성 0.292, 인권보장성 0.155, 친절성 0.154, 전문성 0.102이 순이다. 즉, 치안서비스 만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친절성이라고 볼 수 있다. 회귀계수가 모두 양수(+)이므로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성, 책임성, 친절성, 전문성, 인권보장성의 값이 증가하면 치안서비스 만족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독립변수의 측정값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친절성이 1점 증가하면 치안서비스 만족은 평균적으로 0.42점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나. 치안서비스 질이 치안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아래 <표5>는 종속변수인 치안선호도에 대한 독립변수인 치안서비스 질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표 5> 치안서비스 질에 대한 치안선호도 회귀분석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독립변수	(상수)	-1.574	.143		-11.030*** .000
	신뢰성	.300	.056	.223	5.349*** .000
	책임성	.220	.056	.156	3.903*** .000
	친절성	.379	.067	.256	5.647*** .000
	전문성	.267	.048	.193	5.621*** .000
	인권보장성	.273	.044	.203	6.208*** .000
R제곱	0.787				
수정된 R제곱	0.784				
F값	280.328				
유의확률	0.000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은 0.787이고 F값은 280.328($p=0.000$)이다. 즉, 설명력은 대략 78.7%정도로 모형은 아주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 신뢰성(0.3, $p<0.05$), 책임성(0.22, $p<0.05$), 친절성(0.379, $p<0.05$), 전문성(0.267, $p<0.05$), 인권보장성(0.273, $p<0.05$)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하다. 표준화 회귀계수 베타를 살펴보면, 절대 값이 가장 큰 변수는 친절성으로 베타 값이 0.256이다. 그 다음으로 신뢰성 0.223, 인권보장성 0.203, 전문성 0.193, 책임성 0.156 순이다. 즉, 치안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친절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치안선호도에 미친 영향

아래 <표6>는 치안서비스 만족이 치안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6> 치안서비스 만족에 대한 치안선호도 회귀분석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독립변수 (상수)	0.176	.110		1.599	.111
	.964	.030	.857	32.596***	.000
R제곱	0.735				
수정된 R제곱	0.734				
F값	1,062.472				
유의확률	0.000				

* p<0.05, ** p<0.01, *** p<0.001

분석결과,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은 0.735이고 모형의 F값은 1062.472(p=0.000)이다. 즉, 설명력은 대략 73.5%정도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 치안서비스 만족의 회귀계수는 0.964로 치안서비스 만족이 1점 증가하면 치안선호도는 평균적으로 0.964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7>과 같이 설정한 가설에 대한 종합적 검증결과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7> 치안서비스 질에 대한 치안서비스 만족도, 치안선호도 가설의 채택여부

연구가설	내 용	채택여부
가설 1	치안서비스 질은 치안서비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치안서비스 질이 치안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치안선호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라. 치안서비스 질과 치안선호도간 치안서비스 만족도의 매개효과

다음은 치안서비스 질 요인과 치안선호도 사이에 치안서비스 만족 변수의 매개효과가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아래 <표8>는 Sobel test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표준화회귀계수는 회귀분석 결과에서 가져온 것이다. Sobel test statistic과 p-value는 Sobel test 유의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검정하는 귀무가설 ‘치안서비스 질 요인과 치안선호도의 간접효과(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다’이고, 이를 유의수준 0.05하에서 검정을 실시하고 표의 Sobel test의 유의확률(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8> Sobel test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Sobel test statistic	p-value	Aroian test statistic	p-value	Goodman test statistic	p-value
서비스 질	→	서비스만족	1.168	0.041	0.807					
서비스만족	→	치안선호도	0.852	0.037	0.758	17.9082 ***	0.0000	17.9016***	0.0000	17.9149***
신뢰성	→	서비스만족	0.303	0.048	0.253					
서비스만족	→	치안선호도	0.852	0.037	0.758	6.0879***	0.0000	6.0826***	0.0000	6.0932***
책임성	→	서비스만족	0.173	0.047	0.138					
서비스만족	→	치안선호도	0.852	0.037	0.758	3.6347***	0.0003	3.6314***	0.0003	3.6381***
친절성	→	서비스만족	0.414	0.056	0.315					
서비스만족	→	치안선호도	0.852	0.037	0.758	7.0390***	0.0000	7.0330***	0.0000	7.0452***
전문성	→	서비스만족	0.107	0.040	0.087					
서비스만족	→	치안선호도	0.852	0.037	0.758	2.6571**	0.0079	2.6547**	0.0079	2.6596**
인권보장성	→	서비스만족	0.165	0.037	0.138					
서비스만족	→	치안선호도	0.852	0.037	0.758	4.3781***	0.0000	4.3741***	0.0000	4.382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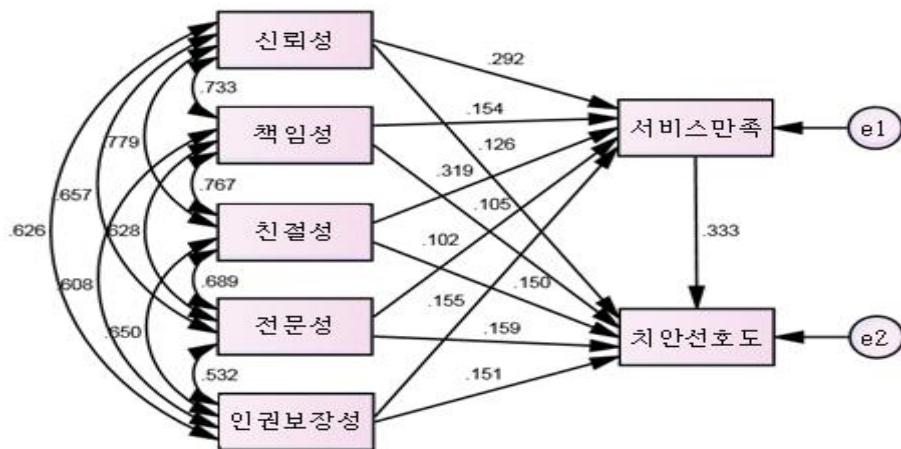
분석결과, 모든 Sobel test의 유의확률(p-값) 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 ‘간접효과(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기각된다. 따라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치안서비스 질과 치안선호도와의 관계에서 치안서비스 만족은 매개효과가 있다(Sobel test statistic =17.9082, p<0.05), 신뢰성과 치안선호도와의 관계에서 치안서비스 만족은 매개효과가 있다(6.0879, p<0.05), 책임성과 치안선호도와의 관계에서 치안서비스 만족은 매개효과가 있다(3.6347, p<0.05), 친절성과 치안선호도와의 관계에서 치안서비스 만족은 매개효과가 있다(7.039, p<0.05), 전문성과 치안선호도와의 관계에서 치안서비스 만족은 매개효과가 있다(2.6571, p<0.05), 인권보장성과 치안선호도와의 관계에서 치안서비스 만족은 매개효과가 있다(4.3781, p<0.05)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9>은 Sobel test를 이용한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9> 매개효과 검증(Sobel test)

연구가설	내 용	채택여부
가설 4	치안서비스 질과 치안선호도간에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4-1	신뢰성과 치안선호도간에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4-2	책임성과 치안선호도간에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4-3	친절성과 치안선호도간에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4-4	전문성과 치안선호도간에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4-5	인권보장성과 치안선호도간에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아래<그림2>은 경로분석을 실시한 모형으로 AMOS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에 의해 가설을 재 검정하였다. 경로계수(-->)는 표준화 경로계수로, 신뢰성-->치안서비스 만족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292로 나타났다. 신뢰성, 책임성, 친절성, 전문성, 인권보장성 사이의 양쪽방향 화살표에 있는 숫자는 변수 간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뢰성과 책임성 사이의 상관계수는 0.73이다. 각 경로의 계수는 해당 경로의 직접 효과이다.



<그림2>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에 의한 재 검정

다음 <표10>는 AMOS에서 제공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표준화계수이다. AMOS에서는 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로 제공한다. 0은 직접효과나 간접효과가 없는 경우이고 괄호안의 숫자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한 후 얻은 유의확률이다.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전문성→치안선호도 경로의 총효과는 0.193이고 직접효과는 0.159(전문성→치안선호도), 간접효과는 0.034(전문성→치안서비스만족→치안선호도)이다. 그리고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이 0.004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간접효과도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0> 표준화 계수

구 분		전문성	책임성	신뢰성	인권보장성	친절성	서비스 만족
서비스 만족	총 효과	0.102	0.154	0.292	0.155	0.319	0
	직접효과	0.102	0.154	0.292	0.155	0.319	0
	간접효과	0 (...)	(...)				
치안 선호도	총 효과	0.193	0.156	0.223	0.203	0.256	0.333
	직접효과	0.159	0.105	0.126	0.151	0.15	0.333
	간접효과	0.034 (0.004)	0.051 (0.003)	0.097 (0.002)	0.052 (0.002)	0.106 (0.004)	(...)

()안의 숫자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확률

5. 연구결과의 요약

치안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들이 인식하는 서비스 수준을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치안선호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치안서비스 질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친절성>신뢰성>인권보장성>책임성>전문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은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만족도 평가에서는 전문성은 친절성과 신뢰성, 인권보장성 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치안서비스 질에 대한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시 친절성은 물론 인권보장성, 신뢰성 등을 보다 강화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권보장성으로 밝혀졌는데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상의 시설과 편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성 요인은 치안서비스 근무자의 능력향상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화에 기여하지만 이러한 요인이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 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뢰성: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정직하고 솔직한 근무 자세와 적극적인 민원응대가 필요하다. 특히 치안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상태와 근무자의 약속, 제공되는 정보, 측정된 비용 등이 시민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어야 한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과정을 공개하고 매사에 상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친절성: 친절성 평가에서 시민들의 애로를 적극청취, 민원응대 시 예의를 갖추고 성의껏 답변하려는 노력, 사용한 언어가 경어는 물론 이해하기 쉽고, 근무자의 태도가 항상 정중하며 우호적인 것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치안서비스의 친절성은 근무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③ 인권보장성: 치안활동에 있어 소극적 의미의 명령이나 강제, 범인의 체포, 수사와 같은 법집행의 임무수행에서 이루어지는 규제활동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인권 보호적으로 행하여지며 치안서비스 차원의 태도로 보여져야한다는 것이다. ④ 전문성: 치안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의 전문성은 근무자의 법규인지정도, 지식보유 정도, 업무처리의 능숙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책임성: 치안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이고, 전달자의 재량권 수준에서 보면 비교적 재량권이 큰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치안근무자의 태도가 치안서비스의 생산주체로서 사명감을 겸비한 행동철학으로 보여야만 그 책임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인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치안서비스 질과 치안선호도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치안서비스의 질과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시민들의 행동의도 중 선호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인지도 하며 치안서비스 질의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치안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치안서비스 만족도가 중요한 매개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치안서비스 질이 치안서비스 만족을 향상시키고 여기서 향상된 치안서비스 만족이 치안선호도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치안서비스 질이 치안서비스 만족도와 치안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매개효과로 치안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연구결과, 개발된 평가지표 및 방법은 그동안 치안서비스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평가의 목적과 기준의 불분명, 지표체계 구성적 측면의 신뢰성 및 객관성 결여, 평가 방법상의 활용성 미흡 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평가는 시설에만 치중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평가자와 수혜자 간 편향적 의견으로 균형 있는 견해를 제시하지 못한 왜곡된 결과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평가주체를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한 점이 타당하였다. 또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친절성으로 밝혀졌는데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민으로부터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민원업무의 편리함, 적극적이며 친절한 근무태도를 겸비하여 치안서비스의 생산자 및 제공자라는 인식과 더불어 겸손하고 올바른 근무자세로 대 시민응대에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치안서비스 질이 시민들의 만족도와 선호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명료화 하여 기존의 평가모형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치안서비스 질적 평가에 대한 표준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공통지표에 의한 여러 종류의 지표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평가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일회적 평가 보다 수차례의 평가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안서비스 영역과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서비스에 대한 시계열 또는 종단적인 비교 평가가 더욱 효과적이다. 넷째, 치안서비스 평가에 대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치안서비스가 각 영역에 있어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제공되며 공공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항목 및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등 전문가에 의한 한층 강화된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치안서비스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어 분야별 평가를 세분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교과반영, 각종 성과급 및 보조금 지급, 상훈수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먼저, 평가주체를 대구광역시 시민들로 한정한 것이다. 이는 지역

적 특성과 환경적 여건 측면에서 국민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로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치안서비스가 업무의 특성상 명령이나 강제, 범인의 체포 등 수사와 관련된 법집행 임무의 규제활동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수혜자의 만족도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안서비스 주체가 생산한 산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비판적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치안서비스 평가에 있어서 평가방법을 주관적 평가 방법과 객관적 평가 방법을 혼합한 통합평가를 통해서 비판의 소지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합적인 평가방법은 주관적 변수와 객관적 변수, 측정지표, 그리고 이를 포함한 양적, 질적 측면의 지표를 연계한 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통합평가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통합연구모형이 개발된다면 치안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물론 본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Key Words) : 신뢰성(responsibility), 책임성(accountability), 친절성(kindness), 전문성(speciality), 인권보장성(guarantee of human rights)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병서 · 김계수, 사회과학통계분석, 서울: 한나래, 2012.
김충남, 경찰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9.
이윤호, 경찰학, 서울: 박영사, 2006.
최선우, 경찰과 커뮤니티, 서울: 대왕사, 2003.
최웅렬, 경찰조직론, 서울: 박영사, 2013.

2. 논문

- 김광주, “지방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의 과제와 대응, p.95-114, 1995.
김기수 · 김덕희, “비영리기관에 있어서의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고객만족경영연구, 제1권 제1호, pp.121-148, 1999.
김석범, “치안서비스의 규범적 성과측정 가능성에 대한 소고”,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제7권 제3호, pp.100-122, 2007.
김영오 · 이원욱,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질이 성과에 미친 영향”, 행정논총, 제42권 3호,

- pp.53–74, 2004.
- 김 인,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치안연구소, p.40, 1997.
- 김인겸, “경찰민원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정현 외,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신뢰결정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1호, pp.159–178, 2002.
- 김정훈, “경찰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애호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치안시책자료, pp. 502–533, 2005.
- 김현구 · 박희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 제도와 운영, 지방행정연구, 제14권 제2호, pp.1–43, 2001.
- 라희문 · 박희정,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제2호, pp.93–114, 1999.
- 박광봉,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연구: 충청북도 주민의식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박기관, “지방정부 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와 영향요인 분석: 횡성군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제24집 3호, 2008.
- 박동일, “노인방문요양서비스품질이 만족도를 매개효과로 서비스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중훈,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1호, pp.40–66, 2001.
- 박희정,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제”, 지방행정, 제50호, pp.42–51, 2001.
- 안정기, “고객민원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우양호 · 홍미영, “공공서비스 질 측정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서브켈 모형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pp.647–674, 2005.
- 이상의, “치안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유재 · 라선아, “서비스 품질의 각 차원이 CS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에 대한 연구”, 마케팅 연구, 한국마케팅학회, 제18권 제4호, pp.67–97, 2003.
- 이정실 · 박명주, “호텔 레스토랑의 서비스 스케이프, 감정적 반응 그리고 행동의도와 관계: 부산지역 관광호텔 중심으로”, 한국서비스경영학회지,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제6권 제2호, pp.105–128, 2005.
- 이황우 · 이병종, “경찰서비스의 시민평가에 관한 연구”, 공안행정학회보, 제25호, pp.12–44, 2006.
- 정용길 · 민병권,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논집, 제14권 제2호, pp.111–130, 1988.
- 조은경,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1998.
- 최병대, 공무원의 전문성화보 방안: 서울시 도시계획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3호, pp.125–144, 2003.
- 최진혁,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시민)평가모델의 발전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충남대사회과학연구소, 제12호, pp.259–280, 2001.

- 최창수,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의 분석과 과제: 중앙정부의 광역자치단체기관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09-426, 2001.
- 최천근,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관리적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11.
- 한표한, 광역단체 평가사례,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1호, pp.124-156, 2001.

3. 기타

- 경찰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3, 2012.
- 경찰청, 2012 경찰백서, 경찰청, 2012.
- 경찰청, 경찰행정 국민만족도 조사보고서, 2012.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민의식조사, 21세기 연구센타, 1994.
- 서울특별시, 2000하반기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보고서, 2000.
-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지표 설계방안, 1999.
- <http://www.police.go.kr/main.html>
-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13>

II. 외국문헌

- Rogers, Steve, Performan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London: Longman, 1990.
- Smith, W. F., Urban Develop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306, 1975.
- Brown, Karin., Coulter, Philip B.,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Police Service Delivery, PAR, 43(1), pp.50-58, 1983.
- Cronin, J. J. & Taylor, S. A, Measuring Service Quality: Are-examination and extention", Journal of Marketing, 56(3), pp.55-68, 1992.
- Dabholkar, Pratibha A., Shepherd, C. David, and Dayle I. Thorpe,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Service Quality: An Investigation of Critical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Thorugh a Longitudinal Study ", Journal of Retailing 76(2), pp.139-173, 2000.
- Denhardt, Janet V. & Robert B. Denhardt, The New Public Service, New York: M. E. Sharpe, 2003.
- Gaster, L. Quality in Public Services.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1995.
- Gillingham. R and W. W. Reece, A New Approach to Quality of Life Measurement, Urban Studies, Vol 16, p.329, 1979.
- Mosher, F. C., Professions in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March/April, 1978.
- Nalbabbadian, J., Tenets of Contemporary Professionalism in Loc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6), 1990.
- National Research Council,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olicing,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2004.
- Oliver, R. L., Satisfaction: A Behavioral Perspective on The Consumer. New York, McGraw-Hill, 1997.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 SERVQUAL ;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 pp.12-40, 1988.

Washington, P. A. J, Policing Citizens: Authority and Rights, Philadelphia: UCL Press, 1999.

A Study of Decisive Factors about the Preference of Police Service - Towards Mediating Effects of Citizens' Satisfaction -

Yoon, Jong Sung·Kim, Young Oh

This study is to offer some sugges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policing administration in future by citizens evaluating police service that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offers. Citizens' evaluation about police service was made through a questionnaire of citizens in this area. As a result of it, the quality of police service by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is generally rated a little high above normal. Selection variables of police service were evaluated classifying 5 factors such as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kindness, speciality,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this study analyzed how these factors influence the result of police service offered by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Citizens' satisfaction about the quality of police services was shown in order of kindness, accountability, guarantee of human rights, responsibility, and speciality. Accordingly, in order to improve citizens' satisfaction about the quality of police services, when offering services, we need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including kindness. Also, it was shown that when the factors of the quality of police services are more improved, the satisfaction goes up, and citizens' satisfaction also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preference of police service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can suggest research models that the quality of police services is able to be applied to citizens' satisfaction and preference evaluation. Second, we can offer indexes about quality evaluation of police services. Third, citizens' satisfaction evaluation about police services should be made cyclically, continuously, and repeatedly. Fourth,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organizations for the evaluation of police services is needed. Fifth, the plans using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police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better the factors of the police service quality are, the higher the results of police service are. Accordingly, the suggestion is that,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of police service, the improvement of strategic service quality is needed.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장 철 영(대구외국어대학교)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아동성폭력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내실화하고, 향후 아동성폭력범죄를 둘러싼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대응정책을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제,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적 정비 측면에서는 유전자정보 등록제도에 관한 검토, 성폭력범죄자 거주제한 관련 규정의 확대, 법원 양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고형을 강화하는 방안, 아동성폭력 범죄자 출소 정보고지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체계적 범죄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계체계 강화 측면에서는 지역연대 활성화 및 방과 후 아동보호시설의 확대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주제어: 아동성폭력범죄 예방, 법률적 체계정비, 예방정책 및 프로그램, 환경적 사회 안전망 구축, 아동 성폭력범죄 해외사례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비교분석결과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I.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성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난 후 약 20년 동안 이 법률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방지 법률안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가해자 수가 2008년에는 15,235명이던 것이, 2009년에는 16,479명, 2010년은 19,712명, 2011년에는 20,189명, 급기야 2012년에는 무려 21,27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경찰청, 2013).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 수는 인구 10만명당 발생비면에서 약 2.5배, 그리고 아동 인구 10만명당 발생비면에서는 약 3.1배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 2012). 다시 말해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면에서 상당히 기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성폭력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제도, 전자발찌제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성폭력범죄 방지 관련 법률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의 비율이 늘고 있어 성폭력범죄 예방 및 그 방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그 상습성과 재범성이 높고,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위주의 양형에 대한 요청이 어느 다른 범죄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형사제재나 형식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는 형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다양한 형사 정책적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민영성 · 김병수, 2009: 204). 외국의 경우 아동대상 성폭력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격리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 상담적 지원 그리고 의료적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다소 소원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보다 더 내실화하고, 향후 아동성폭력범죄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촉구되기에 주요 선진국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대응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성폭력범죄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제와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지원체계 등을 살펴보고, 횡단면적 차원에서의 비교를 통해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아동성폭력범죄의 개념 및 특징

전통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정의는 문화권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물리적 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성적 결정 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극히 미약하여, 상대로부터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이 없다하더라도 상대방이 힘을 이용하여 유사 성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성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다(박기범, 2006).

아동성폭력(child sexual violence)이라는 개념은 아동학대의 한 부분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 정확한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는 사실상 없다. 따라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 연구자들의 의도와 방향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이유미, 2009). 아동성폭력은 아동성학대(child sexual abuse)와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아동 성적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의 개념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08).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아동성폭력을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의 정의에 있어 대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정의로는 Schechter & Roberge(1976), Sgrio(1982), 그리고 Faller(1988)의 정의를 들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chechter & Roberge (1976)는 아동성폭력을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 행위로 이들이 동의할 수 없거나 혹은 가족역할에 대해 사회적 터부를 위반하는 성적 행위”라고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Sgrio(1982)는 아동성폭력을 “정신적, 신체적, 인지적 성숙이 미흡한 아동을 대상으로 강압적 성행위와 추행을 행하는 것”이라 정의 내린다. 또한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의 Faller(1988)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성폭력은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행하는 성적 작위”라 지적한다(장철영, 2010: 96).

국내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성학대를 성적착취, 성적 폭행, 성적 노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에서 유사성교의 내용을 도입하여 강간에 준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1), 민영성 · 김병수(2009: 206-207),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48-51)에서는 아동성폭력을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등을 만지거나 어린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어린이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 성기 등을 삽입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이나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서 아동 성학대”라는 전문용어로 정의하기도 한다. 윤덕경 · 정명희(2004: 13)는 아동성폭력은 발달단계상 미성숙하고 의존적이며,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을 성적 활동이나 가족 간의 역할 수행 면에서 금기시되어 온 성적인 행동에 개입시키는 행위로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심한 경우 뿐 아니라 이보다 경한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아동성폭력을 “발달상 미성숙한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현행법상에

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 그리고 성폭력의 범주를 감안할 때 아동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거나 유도하는 것으로 특정한 성적 행위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동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처럼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속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전에는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 외에도 가해자의 협박에 보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경우도 그려하지만,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에는 공식통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가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2.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처의 중요성

아동들의 성에 대한 가치나 태도 등은 가정, 학교, 또래집단, 대중매체 등에 의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실험과 강화를 통해 발달하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우 주변 환경에서 어떤 경험과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 성 태도는 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2001)는 사춘기 시기의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 가족 관계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 건전한 이성 관계에서의 사랑과 결혼, 올바른 의사결정 및 거부기술, 사회적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대처, 양성평등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라고 포괄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개념으로 성 태도를 정의할 때 아동기의 긍정적인 성태도 형성에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다.

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 대상자로는 부모로 응답한 아동이 가장 많았고 상담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아동이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들이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67). 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입은 피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자신의 행위를 조심함으로써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원인 제공자로 여기기도 한다. 청소년일 경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여성의 피해자일 경우 남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강하게 가질 수 있으며, 성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반응이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태도는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개인도 있으며, 반대로 수치스러움에 끝까지 숨기고 신고를 기피하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경우,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노력하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부모도 있다. 이렇게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 대처방법은 바로 성폭력 피해 결과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가 비슷한 수준에서 발생했을지라도 모두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또한 똑같은 피해수준에 대해 개인마다 경험하는 문제의 수준은 저마다 다르며 이에 대한 대처방법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법

2000년 신설 입법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2009년 개정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증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2010년 개정법은 재범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음주나 약물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신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¹⁾

1) 첫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한다(제2조 제2호 다목, 제2조 제2호 라목). 둘째, 음주 또는 약물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제7조의 2). 셋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한다(제7조의 3). 넷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다(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다섯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한다(제13조). 여섯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한다(제14조 제1항). 일곱째, 반의사 불법 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한다(제16조). 여덟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한다(제18조의 2·제18조의 4). 아홉째,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분리

지금까지의 성폭력특별법 및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의 제정과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입법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드러낸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심각화에 따른 법정형의 가중(특히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둘째, 성폭력범죄현상의 다양화에 따른 구성요건의 세분화, 셋째, 성폭력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절차 규정 및 정비, 넷째,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 정책적 수단과의 연계강화가 그것이다. 특히 종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 적용 및 실현에 한계가 있다 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강력한 형사제재 수단이 허용된 형사법 체계가 성폭력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형사특별법의 제정과 잦은 개정으로 인한 중복적 규정과 법정형의 비체계성이라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특별법을 나눈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특별법에 대해 앞으로도 체계적이지 못하게 잦은 개정을 거듭하다보면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효율적 대처에 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성폭력범죄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형사법이 도입된 요인을 살펴보자면, 성폭력범죄 피해현장에서 활동해온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의 노력, 성폭력 문제가 부각되는 사회적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입법에서는 현장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형사입법자와 집행당국이 이러한 정책논의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계기삼아 성폭력에 대처하는 형사입법과 정책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아동성폭력범죄 발생현황

다음 <표 1>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서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을 보여 주고 있다. 아동성폭력사건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아동성폭력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에게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전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가족들의 고통이 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퇴거 조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의 보호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하도록 하며, 보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제28조의 2 - 제28조의4 및 제48조 제2항). 열째,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한다(제38조의2, 제38조의3).

<표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6세 이하	170	159	153	127	85	138
12세 이하	762	883	1,029	953	871	834
13-15세 이하	733	690	776	1,467	1,507	1,707
16-20세 이하	2,280	2,435	2,799	4,159	4,601	4,937
21-30세 이하	5,023	5,149	5,377	6,381	6,445	6,341
31-40세 이하	1,759	1,762	1,908	2,054	2,188	2,093
41-50세 이하	1,535	1,579	1,751	1,737	1,775	1,617
51-60세 이하	420	485	609	727	941	871
60세 초과	228	273	327	253	304	297
계	13,573	13,482	14,919	17,858	18,725	18,841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경찰통계 2006-2011」 자료 재구성.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피해자 상담현황을 보면, 2012년 성폭력상담건수 2,390건 중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96.9%, 남성이 3.1%이며, 연령별로는 성인 피해가 66.9%, 청소년 16.2%, 어린이 12.2%, 유아 4.6%, 미상 0.1%으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4).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강간이 39.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성추행 36.9%, 성희롱 10.4%, 스토킹 5.1%, 강간미수 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98.1%, 여성 1.8%, 미상 0.1%으로 대부분의 성폭력이 남성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 82.0%, 청소년 11.6%, 어린이 2.5%, 유아 0.5%, 미상 3.4%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단독범의 경우에도 자신보다 열세의 상대방을 피해자로 삼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가해자에 의한 아동대상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도 추정하여 볼 수 있다.

<표 1> 한국성폭력상담도 연도별 상담환형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2012: 4).

5.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피해여성에 관한 연구였고, 아동성폭력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사법적 보호방안과 법률 개선방안을 제시한 범죄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장석현, 2009; 김경희, 2008; 허경미, 2008; 박기범, 2006),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김혜연, 2009; 우기택, 2009; 이문환, 2007), 성폭력범죄의 실체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양랑해, 2009; 강태수, 2006)가 수행되었고, 성폭력 피해아동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대책연구(신기숙·조성호, 2009; 김효습, 2008), 성폭력범죄수사에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분석(김용근, 2008; 신성대, 2009; 정태성, 2005)이 수행되었다. 또한 사회복지학적인 관점에서는 아동성폭력 범죄를 조명한 아동성폭력실태와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연구가 수행되었다(이윤호, 2007; 이순희, 2006).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들의 연구는 사실상 하나의 정책적 제도나 방안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어 있다. 즉,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편향적인 연구, 또는 성범죄자의 심리 유형분석 내지는 단순한 성범죄 현황분석에 대한 제한적 연구만이 진행되어 왔다. 아동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문 역시 성범죄 현황을 나열하거나 아니면 협소한 범위에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고, 적실성 있는 대응방안을 사례분석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I. 비교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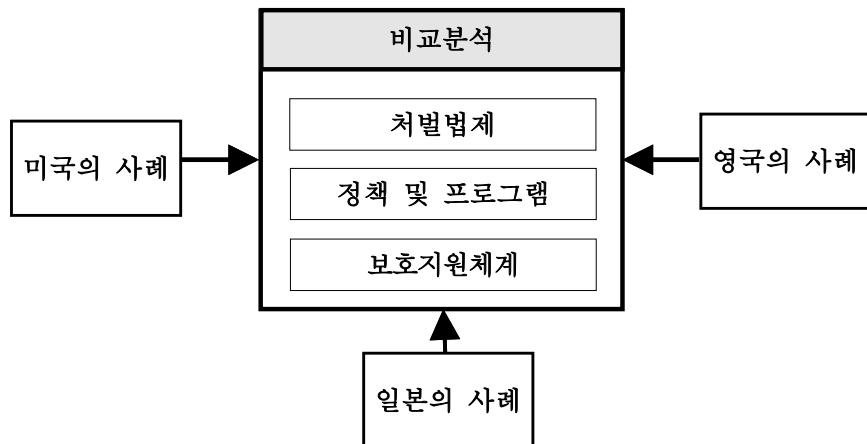
1. 비교 분석틀의 구성

우리 사회는 해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건수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사회불안과 충격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아동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 놓지만, 여전히 아동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성폭력범죄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발달이 취약하고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범죄예방 대책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아동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응정책을 비교분석 하여 아동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고, 적실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처벌법

제,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비교를 통해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비교 분석틀



1.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제

1) 미국

미국의 아동 성폭력범죄 관련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그 행위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으며, 성적 행위를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취약한 12세 이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형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2세 이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Children Act)은 아동에 대한 폭력 범죄에 대한 연방의 처벌을 강화하고 각 주를 보조하여 이러한 범죄를 소탕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²⁾ 이 법률은 연방 형사법(crime code)을 개정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예를 들면 만약 범죄가 유괴, 과도한 성적 학대, 살인 미수 및 살인과 관련된 범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가 해당된다. 또한 이 법률은 주정부의 요구에 따라 연방정부가 기술적, 법의학적, 검사의 보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가 아동에 대한 폭력적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강제력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제공한다. 보조금은 또한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한 교육, 개입, 예상, 피해자 보조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다. 이 법에는 미국 법률 제18편 제101장에서는 아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 증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2060A조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거나, 폭력행위 더불어 유괴 또는 유괴 미수범, 과도한 성적인 학대나 그 미수범, 혹은

2) http://www.ojp.usdoj.gov/vawo/laws/vawa/stitle_e.htm#40502

살해기도 등이 위력이나 위력을 포함한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또는 종신형과 벌금을 중과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18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 조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 또는 지방 검사에 의한 기소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법 제102장).

국가아동보호법(National Child Protection Act)은 아동 학대의 금지 및 방지 전략으로서 주정부가 아동 학대 범죄정보를 FBI에 제출하거나 그 정보를 FBI의 국가 범죄기록 저장시스템에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 제정되었다. 법무부장관은 각 주의 범죄 기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각 주가 아동 성폭력범죄 기록을 온라인으로 국가 범죄 기록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순희, 2006: 42-48). 각 주의 공인된 형사사법기관 담당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아동 학대 범죄 정보를 보고하고 정보화작업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보고서의 형식, 내용, 정확한 범죄 기록 및 기타절차들이 포함된다(Underwager, 1998: 253-255).

2001년 개정된 국가아동보호법은 1993년의 국가아동보호법의 시행 이후 발생한 신상 기록정보의 실용성을 제고하는 문제와 국가의 범죄 방지와 사생활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신상확인의 정확성과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주의 공인된 형사사법기관이 지문 외에도 다른 생물학적 측정 수단으로 정보제공자인 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은하, 2005: 30). 또한 신상자료 확인 요청은 주 범죄기록보관소에 제출되는데, 이 보관소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주 범죄 기록 보관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FBI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의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1998)³⁾의 제정으로 연방형법이 개정되어, 매일 혹은 어떠한 형태의 통신시설 또는 주(州)간 혹은 국가간의 상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16세 이하의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혹은 e-메일 주소를 의도적으로 전소하여 그 사람을 불법적인 성적 활동에 개입하도록 유혹하거나, 부추기거나, 제공 또는 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제1편). 이외에도 아동 포르노그래피로부터 아동보호(제2편), 12세이하의 아동에게 학대적인 성적 접촉을 가한 경우 최장 징역기간의 두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제303장에서는 재범의 경우에도 최장 징역기간 두 배의 처벌조항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제3편). 제4편에서는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외설물을 전송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한다는 것을, 제5편에서는 아동에 대한 범죄 및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청소년과 불법적 성적인 활동 또는 성적 행위에 개입하거나 아동의 성적 착취에 개입하는 범죄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자는 만일 피해자가 14세 이하이고 가해의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종신형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제8편에서는 범죄자가 어떠한 전자통신이나 원격 컴퓨터 서비스 등에 공무원의 감독 없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 양방향 컴퓨터

3) <http://www.prevent-abuse-now.com/law2ac.html> 참조

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9편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조사위원회를 통해 활동하는 국가과학아카데미에 요청하여 컴퓨터 기반 기술과 함께 인터넷에서 아동들이 포르노그래픽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존재를 고지하는 현재의 주 정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부모들이 직접 FBI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핫라인 구축의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현옥, 2008: 17).

2) 영국

영국은 성폭력범죄자법(Sex Offenders Act)을 제정하여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성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형의 선고 또는 출소 이후 14일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이후 14일 이내에 경찰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신고하여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1956년 성범죄법에 규정된 강간, 13세 미만의 소녀와의 성교행위, 남자에 의한 근친상간행위, 동성애행위, 남성 간 부정행위, 여성에 대한 성폭력, 동성애 행위를 위한 폭행, 16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매춘의 유혹 등이다. 이 법의 특징은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범죄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며, 각 범죄자의 분류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져 있고, 성범죄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점 등이다.

1999년 영국 정부는 성범죄관련법 전반을 점검하고 기존의 법규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법개정 검토의 목적은 아동을 비롯한 잠재적 취약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Home Office, 2000). 이에 뒤이은 성범죄법개혁백서는 기존의 성범죄관련법규정이 낡고 일관되지 못하며 차별적이라 지적한다. 그 결과 입법된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은 기존의 성범죄에 관한 기본법이었던 1956년 성범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사실상 새로운 성범죄 기본법의 의미를 가진다. 2003년 법은 기존의 판례법상 범죄를 실정법화하고, 현대사회의 성범죄문제에 부합하도록 대부분의 규정을 신설, 폐지, 개정하였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개별법에 흘러져있던 성범죄 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한데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평가를 반영하여 상세하게 법정한 성범죄관련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2003년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규정은 13세미만자에 대한 성범죄, 신뢰관계를 악용한 아동대상성범죄, 가족내 아동대상성범죄, 아동포르노물 및 매춘범죄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13세미만자에 대한 성범죄

- 13세미만자 강간: 13세미만자의 질, 항문, 구강에 남성 성기를 강제로 삽입한 자는 무기구금형에 처한다(제5조).
- 13세미만자 성폭행: 13세미만자의 질, 항문에 신체의 일부를 강제로 삽입한 자는

무기구금형에 처한다(제6조). 13세미만자에 대해 강제로 성적접촉을 한 자는 14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제7조).

- 13세 미만자 의제강간: 13세미만자와 성행위 또는 성적접촉을 한 자는 14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제9조). 13세미만자와의 성행위 또는 성적접촉을 교사 조장한 자도 같다(제10조).
- 기타 13세미만자에 대한 성범죄: 성적만족의 목적으로 13세미만자가 보는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제11조). 성적만족의 목적으로 성적행위 또는 성적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13세미만자로 하여금 보게 한 자도 같다(제12조).

② 신뢰관계를 악용한 아동대상 성범죄

18세미만의 자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고의로 성적 접촉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제16조). 18세미만의 자에 대해 성적행위를 하도록 교사 조장한 자의 경우도 같다(제17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는 병원, 보호시설, 지역사회보호기관, 민간보호기관 등의 보호업무가 포함된다(제21조).

③ 가족 내 아동대상 성범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숙부모, 주거를 같이하거나 정기적으로 보호양육관계에 있는 계부모, 양부모, 4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자(제27조)가 18세 미만의 자에게 질, 항문, 구강에 신체의 일부 또는 남성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행위자의 항문 또는 질, 구강에 삽입한 경우에는 14년 이하의 구금형, 기타 성적접촉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제25조).

3) 일본

일본의 아동성폭력 관련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아동매춘·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아동복지법⁴⁾은 일본헌법 제25조의 생존권의 이념을 아동에 대하여 구체화하기 위해 1947년 제정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동법 제34조 제1항 제5호 “만 15세 미만의 아동에게 술자리에서 접대를 하는 행위를 업무로 시키는 행위”, 제6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제7호 “전 각호에 기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기타 아동에 대해서 형별 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그 사정을 알고 아동을 인도하는 행위 및 그 인도행위를 당할 염려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타인에게 아동을 인도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제9호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아동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조항을 살펴보면, 제5호, 제7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60조 제2항). 그리고 제6호(아동에게

4) <http://law.gov.go.jp/cgi-bin/idxsearch.cgi> 참조

음행을 시키는 행위)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60조 제1항). 또한 아동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소가 제기된다.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 성폭력을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여 이를바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교, 성적폭행, 성적 행위의 강요·교사, 성기나 성교를 보여주기, 포르노그래피의 피사체 등에 아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동 성매매·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아동성매매와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아동성매매와 아동포르노그래피는 아동 성폭력에 포함된다. 아동성매매란 “아동, 아동에 대한 성교 등의 주선자, 아동의 보호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고, 당해 아동에 대하여 성교 등(성교 혹은 성교유사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 등을 만지거나 혹은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것(제2조 제2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성매매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조).

형법 제22장 ‘음란, 간음 및 중혼의 죄’ 조항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13세 미상의 남녀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남녀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다(제176조). 또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13세 이상의 여성을 간음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여성을 간음한 자도 동일하다(제177조). 이를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만(제180조 제1항), 2인 이상이 현장에서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180조 제2항).

3. 정책 및 프로그램

1) 미국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기존의 치료나 교회 프로그램의 무력화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보다 획기적인 조처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범죄자 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Laws)과 성범죄자 고지법(Sex Offender Notification Law) 그리고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of Sex Offenders) 등의 입법이 이루어졌다(강은영 외, 2003: 81-83).

성범죄자 등록법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주별 등록체계를 마련할 목적으로 1995년 미국 43개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중앙등록기관이나 거주하게 될 지역의 검찰, 집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등록법이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성범죄 관련 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각 지역 등록기관에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사진, 지문, 혈액과 타액 샘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범죄자가 받은 치료 등에 대하여 등록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등록법에 의해서 위반자의 정보는 법에서 정한 기관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조치로 1994년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공공통지로서 모든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김신연, 2003: 28). 현재 연방법률과 연방법무부지침(US Attorney-General guidelines)에 따라 각 주의 제도는 점차 합일된 내용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소극적 공개(Passive Release of Information) 방법으로서는 성폭력범죄자 명단 제공 인터넷사이트와 관련 책자나 시디롬을 제공하며, 적극적 공개(Active Notification) 방법으로서는 방문 통지, 우편 통지,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지방방송매체를 통한 보도, 신문 공지란 이용, 전단지 배포, 청소년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 시 전달한다.⁵⁾

미국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기존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제도와 형사정책이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자, 2002년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가석방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성위치확인장치(GPS)가 장치된 전자팔찌를 착용케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시작한 것이다. 미국 아이오와 주의 경우 성범죄대책법(Sex Offender Act, 2006)에 따라 2006년부터 성폭력범죄자등록명부(sex offender registry)상의 성폭력 범죄자 중 폭력을 수반한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소년범 제외)에 대해 최소 5년 동안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성폭력에 관련한 정보, 통계, 자료 등을 수집, 배포하는 센터로서 국립성폭력자료센터(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돋지는 않지만 주정부, 지역정부, 성폭력방지단체, 강간 방지센터, 사회단체 프로젝트, 정책 입안자, 정부 기관, 방송, 교육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다. RAINN(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는 국가 차원의 가장 큰 규모의 성폭력 방지 기구로 국립성폭력(National Sexual Assault)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통계자료, 예방 요령 및 최근의 관련 소식들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RAINN의 성폭력 핫라인을 이용하거나 각 지역 위기전화(Local Rape Crisis Hotline)를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 위기전화 센터들은 피해사건 접수, 카운슬링, 피해자와 병원, 법정, 형사 과정에 동행하는 서비스, 예방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무소(Office for Victims of Crime)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송을 지원한다. 피해자를 위한 보조, 가정 및 가족 내 폭력 정보 제공, 스토킹 정보 제공, 성폭력 가해자 정보 제공, 무료 전화 등이 제공된다(문영희, 2008: 84-85).

5) <http://www.fbi.gov/hq/lab/codis/program.htm> 참조

2) 영국

1997년 성폭력범죄자법(Sex Offenders Act)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평결, 경찰경고 조치를 받은 자, 그리고 성폭력범죄로 구금형 복역자, 지역사회 내 처분,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 이전 시 14일 이내에 경에 신상정보와 소재를 등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도입 하였다. 성폭력범죄자등록제도의 취지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전국 경찰전산정보망(Police National Computer)에 등록 관리함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건발생시 수사 자료로 활용하며, 재범을 방지하는데 활용하려는 것이다(Home Office, 1996). 등록대상자에는 정신질환으로 무죄 선고된 성폭력범죄자도 포함되지만, 모살과 고살, 유괴의 경우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경우라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범죄유형, 범죄자의 연령, 피해자의 연령, 형기가 기준이 된다. 등록기간은 범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특히 성폭력범죄로 30개월 이상 구금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신기간이다. 신상정보등록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별금형 또는 구금형이 부과된다.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공개절차에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경찰관서 출두 또는 우편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으로부터 등록관련 정보를 접수한다. 또한 등록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등록을 고지하고, 등록절차를 관리한다.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업무에 참여하며, 아동 관련기관 취업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자 여부의 정보조회요청을 처리하고, 지역순찰 경찰에게 관내 성폭력범죄전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관내 대상 성폭력범죄자를 직접 감독하고 지역사회 내 치료보호기관과 연결시켜주며, 재범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지 평가한다(Home Office, 2005).

영국의 경우 형사정의 및 공공질서법에 의해 체포된 범죄자에 대해 머리카락이나 타액과 같은 시료샘플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였다. 시료채취를 위해 1984년 제정된 경찰·형사증거법(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에 의하면 체내샘플(intimate sample)과 체외샘플(non-intimate sample)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기준은 혈액, 정액, 소변, 타액, 음모, 머리카락 등은 체내샘플이고, 그 외 손톱 밑에서 채취한 도말표본 등 신체 이외의 부위에서 채취한 도말표본은 체외 샘플이라고 한다. 샘플채취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자에 한정되고, 반드시 동의절차를 서면으로 거쳐야 하며, 경찰이 승인해야 한다.⁶⁾ 1995년 4월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여 처음에는 입력대상자를 성폭력범죄자로 제한하였으나 점차 증가시켜 살인, 강도, 차량절도 등의 범죄자들로 적용대상을 넓혔다.

영국에서 아동 성폭력범죄자들은 감옥에서 석방된 후 72시간 내에 해당 경찰서에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다. 또 아동 성폭력범죄자가 7일 이상 다른 주소지에 머물거나 해외에 3일 이상 머물 경우에도 이 사실을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범죄자가 해외에서 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국은 아동 성폭력범죄 경력자들의 해외여행을 금지할 수도 있다. 경찰국가로 소

6)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62

문난 영국은 이상의 규제가 상당한 인권 침해요소가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CCTV를 곳곳에 설치하고 있으며, 경찰관서에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DNA 파일이 보관돼 있어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매우 엄격한 편이다.

3) 일본

일본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거나 출소하더라도 ‘재범방지조치대상자’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추적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재범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추적 관리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법무성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가 석방될 경우, 거주 예정지와 석방 일시 등 출소 정보를 1개월 전에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블로킹 제도가 도입되었다. 경찰과 인터넷 핫라인 센터가 만든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인터넷 사이트들이 문제사이트로의 일반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경우도 블로킹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통학로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범인들이 숨어있지 못하도록 공원 등의 나무를 초등학생 키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게 잘라내고 있다. 도쿄도내 유치원과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부모가 학교에 와야 어린이들이 하교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비상경보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각 이동통신사는 어린이들이 위험을 당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곧바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어린이용 휴대전화도 판매하고 있다. 또 출소자나 비행 청소년의 거주지를 상담원이 직접 방문해 사회 복귀 상담 및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4.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체계

1) 미국

아동을 학대 및 유기에서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미국의 정부기관은 아동보호서비스국(Child Protective Services)이다. CPS의 주요 업무는 아동을 가정 내에서의 학대 특히 부모로부터의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CPS는 부모, 이웃, 의사, 선생님 등으로부터 아동의 학대 사실을 신고 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CPS 직원이 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직원은 아동, 부모, 기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한다. 범죄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면 경찰이 사실을 통보받는다(송윤정, 2006: 21).

전국성폭력보호지원센터(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 관련정보와 연구 성과의 자료센터 역할을 하며,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전문가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성폭력방지전략,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전국적인 성폭력방지 정책실행을 뒷받침한다.⁷⁾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기관, 주정부기관,

7) www.nsvrc.org

보호지원기관과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센터는 2000년 개설된 이래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전국단위의 정보자원 허브역할을 해 오고 있다. 동 센터가 관리하는 자료는 성폭력범죄 통계, 관련연구, 법령, 교육훈련커리큘럼, 예방정책 및 프로그램정보 등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해 성폭력범죄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단체, 전문가를 지원한다. 동 센터는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호지원서비스를 하지는 않지만, 보호지원기관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과 적절한 보호기관을 연결, 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⁸⁾

미국의 각 주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대응팀(Sexual Assault Response Team)은 1990년대 종합적 체계적 성폭력대응체계의 필요성에 기해 구성되었다. 지역단위별로 관련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적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관련법집행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이 성폭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유기적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법의학진단전문가, 성폭력피해자보호전문가, 경찰과 검찰의 협력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피해 자보호지원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의료기관과 법집행 기관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수사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⁹⁾ 각 주마다 성폭력대응팀을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성폭력피해조사를 관련전문가들이 동시에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개별 기관전문가마다 별개의 보호지원 내지 조사를 진행하되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형적인 성폭력대응팀은 응급의료전문가, 성폭력전담법집행관, 성폭력피해자보호전문가로 이루어진다. 필요에 따라 과학수사전문가, 검찰, 범죄피해자구호기관, 증인보호기관, 복지기관 관련전문가도 참여한다.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화된 보호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성폭력대응팀 체계에서도 성인피해자와 구분되는 아동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사례도 있다. 캘리포니아 성폭력대응팀의 경우 19개 성폭력피해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연합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면담전문가와 법집행기관이 공동으로 법의학적 진단과 면담을 하게 되며, 14세 이상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의학간호사가, 14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아과전문의가 진단을 하게 된다. 응급진료조치에는 사후피임, 성병검사가 포함되며, 상담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법적절차진행과정에서의 전문가에 의한 보호지원이 제공된다.¹⁰⁾

2) 영국

2007년 4월 영국정부의 성폭력과 학대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실천계획(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은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보호지원의 확충과 사법체계를 통한 보호조치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본 실천계획은 각각 피해자영역과 가해자영역에 따른 성폭력범죄 방지목적의 개입조치를 다음과 같이

8) www.nsvrc.org/about/national-sexual-violence-resource-center

9) www.uww.edu/sart/; www.star.ak.org/; www.ojp.usdoj.gov/ovc/fund/SART

10) www.sbcphd.org/family/sart.html

체계화하고 있다(Home Office, 2007). 제1단계 일반적 조치로서는 예방교육, 시민인식 향상, 음주 약물 피해감소, 환경안전의 증대가 포함된다. 제2단계 피해위험에 대한 조치로서는 위험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행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제3단계 피해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이차적 또는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동 계획의 목적은 첫째 성폭력 및 아동성학대피해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의 확대다. 둘째 성폭력 및 아동성학대 사안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대응조치를 개선하며, 성폭력과 아동성학대 발생요인을 방지한다. 이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은 경찰, 검찰 (Crown Prosecution Service), 법원, 교정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성폭력전담센터(Sexual Assault Referral Centers), 기초보건재단(Primary Care Trusts), 법의학기관(Forensic Service Providers and Forensic Practitioners)과 지역별 범죄및무질서감소협력체계(Crime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s), 형사사법위원회(Criminal Justice Boards), 아동보호위원회(Safeguarding Children Boards) 등이다. 성폭력피해자보호분야의 민간자원기관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보호전문가를 양성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 자지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하지만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은 높은 반면 소규모 조직과 안정적이지 못한 재정기반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동 실천계획은 피해자기금 (Victim Fund)에서 재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 규모의 성폭력피해자구조기관 (Survivors Trust, Rape Crisis)과 연계하여 전국적 차원의 보호지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Home Office, 2007).

한편, 영국의 성폭력피해자전담센터(Sexual assault referral centers)는 성폭력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 분위기에서 여러 기관과 절차를 거쳐야하는 어려움 없이 통합적으로 의료적 치료와 상담 및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 전담 센터는 이러한 보호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다양한 법률기관, 정부기관, 의료기관을 통합해 피해자보호지원과 수사지원역할을 담당한다(Home Office, 2005).

전담센터는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관계기관, 관련시민단체, 일반의원, 보호관찰소, 보건의료전문가, 경찰, 그리고 피해자개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행한다. 제1단계인 신속대처단계 (Fast Track)에서는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해 응급지원과 위기대처조치가 취해진다. 응급대처전문가(Crisis Worker)가 피해자에게 관련조치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적 검사와 경찰조사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제2단계인 보호지원단계 (Holding and Pre-Court)에서는 면담이나 전화를 통해 지원담당자(Support Worker), 성폭력전담보호담당자(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ocate)가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될 공포와 악몽 등의 경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식 상담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제공한다. 제3단계인 장기적 치료단계(Long term therapeutic intervention)에서는 상담전문가가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상담치료를 수행한다. 법적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한 후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상담을 통해 치료 보호하는 것이다.¹¹⁾

3) 일본

일본의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과 동시에 아동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UN 아동권리헌장 정신을 법률 및 제도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자국의 아동보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아동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아동복지법을 정점으로 해서 아동학대방지법, 아동보호법 등을 제정하여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의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 법무성의 인권위원회의 및 이민국, 경찰청, 문부과학성 등과 함께 지방정부 및 사법부의 가정법원, 입법부의 지원 조직 등에서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아동학대방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 및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보호자와 학대받은 아동의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배려와 아동이 좋은 가정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지도 및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관계 부처 상호간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지원, 의료 제공 체제 정비 등 아동학대의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상담소등 관계 기관의 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의사, 보건사, 변호사 등 아동복지 업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학대를 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행위가 전문적인 근거에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에게 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아동학대 방지법 제4조 1항~3항).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연구의 책무도 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아동의 인권,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통고 의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홍보 활동이나 계발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심신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받은 사례를 분석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방책,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살피는 것 및 아동을 학대한 보호자의지도 및 지원, 학교 교직원 및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역할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검증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제공 등이 아동의 심신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염두에 두어 이런 행위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계몽에 노력하여야 한다(아동학대방지법 제4조 4항~5항).

11) www.homeoffice.gov.uk/crime-victims/reducing-crime/sexual-offences/sexual-assault-referral-centers/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해서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마련된 아동복지 전문기관이다. 모든 도도부현 및 정부의 영에 따른 지정도시(2006년 4월부터 핵심 도시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에 최소 1개 이상의 아동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도부현에 따라 그 규모와 지리적 상황에 따라 아동 상담소 및 출장소를 설치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일본 전국에 20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¹²⁾

아동상담소의 주요 업무로는 먼저 상담이 있다.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받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아동의 가정, 지역 상황, 생활 경력과 발달, 성격, 행동 등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 진단 및 판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 처우 정책을 결정하여 기관 내에서 또는 관계 기관 등을 활용하여 일관되게 아동에 대한 처우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상담소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격리하여 보호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아동복지사, 아동 위원, 아동 가정 지원 센터 등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동을 아동복지 시설, 지정된 국립 요양소 등에 입소시키고 또는 위탁 보호 수탁자를 파견하는 등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상담소는 친권자의 친권 상실 선언 청구, 후견인 선임 및 해임 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내실화하고, 향후 아동성폭력범죄를 둘러싼 정책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주요 선진국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대응정책을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아동성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제,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적 정비 측면에서는 유전자정보 등록제도에 관한 검토, 성폭력범죄자 거주제한 관련 규정의 확대, 법원 양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고형을 강화하는 방안, 아동성폭력 범죄자 출소 정보고지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유전자정보은행제도는 최근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개인의 정보를 관리함으로 인해 과도한 사적 정보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 등 우려되는 점들도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제도를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 동 제도의 입법화를 촉진해야

12) www.mhlw.go.jp.

할 것이다.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미국의 여러 주법에서는 성폭력범죄자가 아동관련 시설로부터 거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지역으로는 공립, 사립학교, 인가받은 일일보육센터, 이외 아동보육시설, 공원, 놀이터 등으로 이들 지역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거주시설을 설정하거나, 1,000피트 이내의 시설에서 의도적으로 성범죄자 치료를 받거나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한 시설의 입사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특징이 상습적으로 범죄를 반복한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범죄자들을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아동관련 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제한 규정의 도입도 잠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성폭력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이후 출소하는 경우 출소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이 출소 후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피해자 보호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시행과 병행하여 출소자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확충과 출소자 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체계적 범죄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 및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 범죄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범죄자 검거에 가장 큰 일등공신을 한 것이 바로 그 주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보다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전담인력의 강화와 CCTV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성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마련된 이래로 경찰수사연수원과 법무연수원에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기관별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아동 조사의 전문성은 몇 번의 교육이나 워크숍 참여만으로는 갖추어질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이다. 조사 전략의 향상과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조사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와 같이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어서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민감한 사건에서는 아동과의 조사 기술이 중요한 관건이며, 성공적인 면담을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언어, 기억,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조사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함께 요구된다. 적절한 조사는 조사에 담긴 진술 내용의 신빙성 평가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의 책임을 형사사법 관계자들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동심리학자와 소아과나 정신과 전문의 등이 아동의 진술능력과 아동의 진술과 관련한 전문적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로도 전문가 참여제도의 확대와 활성화 방안 모색

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계체계 강화 측면에서는 지역연대 활성화 및 방과 후 아동보호시설의 확대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면,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의 활성화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광역차원의 지역연대와 시·군·구 지역연대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연대에는 시청과 의회 외에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현장상담센터, 보호시설,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구성요소로 참여하고 있고, 지역연대를 통해 사건화 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역연대 활동의 한 예로 경남 지역연대의 마을지킴이 활동을 들 수 있다. 마을지킴이로 선임된 사람들이 주변을 유심히 눈여겨봄으로써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특히 친족성폭력이나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발견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옮겨 주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여러 단체들이 성범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 상당수는 이러한 단체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예방에 민간인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또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인 실천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집행할 전담국가기구 혹은 관련기관 간 협의 조정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용근. (2008).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피해자학연구」, 16(2): 101-122.
-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문영희. (2008).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인권 복지연구」, 4: 83-102.
- 민영성·김병수. (2009).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법학연구」, 50(2): 203-233.
- 박기범. (2006).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8(2): 217-238.
- 법무부(2007), 「성 · 가정 · 아동폭력 형사정책 공청회 자료집」.
- 신기숙·조성호. (2009).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2008).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실행계획」.
- 여성가족부. (2008).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윤덕경 · 정명희. (2004),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승환. (2006).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 및 주요쟁점 검토」.
- 이윤호. (2007).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3(2): 185-217.
- 장석현. (2009).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 231-259.
- 장철영. (2010).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AHP 기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4(4): 93-12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성폭력상담 통계」.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0). 「아동성폭력의 관련 법·제도 고찰」.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심포지엄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허경미. (2008).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역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 45-77.
- 허영희. (200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적 제언. 「법학연구」, 15(1): 185-210.
- 황만성. (2004). 「형사절차상 성범죄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원.
- 황은영. (2008). 「아동성폭력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형사적 개선방안」. 한국범죄방지재단.
- Carich, M. S. & M. H. Stone. (2001). Sexual Offenders and Contemporary Treatments.

-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7(1): 1–16.
- Duffany, A. & Panos, P. T. (2009). Outcome evaluation of a group treatment of sexually abused and reactive children.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9(3), 291–303.
- Faller, C. (1988). *Child Sexual Abuse: An Interdisciplinary Manual for Diagnosis, Case Management and Treat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 Gillian, M. (2002). *Beyond Surviving: Toward A Movement to Prevent Child Sexual Abuse.* Safety Program.
- Grosz, C. A., Kempe, R. S., & Kelly, M. (2000). Extrafamilial Sexual Abuse: Treatment for Child Victims and their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24(1): 9–23.
- Hickey, R. C. (2006). *Serial Murderers and Their Victims(4th ed.).* Belmont: Wadsworth.
- Home Office. (2000). Setting the Boundaries: Reforming the Law on Sex Offences.
- Home Office. (2007). 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 Peter, D., & Richard, F. (1999). DNA Database Searches and the Legal Consumption of Scientific Evidence. Rev 931, No29.
- Schwartz, B. K., & Cellini, H. R. (1997). *Sex Offender Recidivism and Risk Factors in the Involuntary Commitment Process.* Albuquerque, New Mexico: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 Sgrio, S. (1982). *Handbook of Clinical Intervention in Child Sexual Abuse.* Lexington: Lexington Books.
- <http://www.police.go.kr/>
- <http://www.sisters.or.kr/>
- <http://www.child1375.or.kr/index.asp>